

청주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가단22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재인, 정우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 고 1. B

2. C

피고(선정당사자) D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3. 18.

주 문

1. E과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 F 사이에 2019. 10. 30. 체결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E의 각 2/13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9,591,3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 F은 원고에게 각 4,897,8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 F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G 주식회사는 2003. 10. 24. H 주식회사에게 E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H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1. 8. 3. “E은 원고에게 10,924,6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1. 8. 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1차4251)을 하였다.

○ E의 부(父) I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J, 자녀 E,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 F(이하 편의상 선정당사자, 선정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공동상속인인 J, E,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각 1/4지분)로 하고 J과 E은 상속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7. 피고들 4인 공유 명의로 ‘2019. 10.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3. 채무자 I,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12. 3.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로

말소되었는데, 2019. 10. 30.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6,000,000원이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¹⁾는 2021년경 합계 153,343,5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K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청원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E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미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3. 31.임이 기록상 분명하다)의 1년 이전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사실과 그것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것 및 당시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E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약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분²⁾인 2/13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피고들의 선의 수익자 항변

피고들은, 자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인의 처 J이 자녀들에게 자신을 부양하라며 그 대신 자신의 상속분을 양보하였고 E도 J의 부양을 형제인 피고들에게 맡기겠다며 자신의 상속분을 양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경위에다 당시 피고들이 E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더라면 의도적으로라도 E으로 하여금 상속포기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리 하지 않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경위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당시 E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들은 2021. 10. 5.자 답변서로써 'E은 별다른 직장 없이 전국을 떠돌며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속을 썩였고, 다른 형제들과도 사이가 악화되어 남남처럼 지내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6.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이 사건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과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0,924,6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1. 8. 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채권액이 48,487,265원[= 10,924,600원 + 10,924,600원 × 17% × (7 + 285/365)년 + 10,924,600원 × 20% × (10 + 211/365)년, 계산 편의상 윤년은 고려하지 않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이르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년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53,343,500원인 사실, 말소된 근저당권의 2019. 10. 30.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26,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 153,343,500원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13지분 가액 가운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19,591,307원[= (153,343,500원 - 26,000,000원) × 2/13]이 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19,591,307원(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의 한도 내로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J이 혼인한 후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J의 기여분을 50% 정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감안하여 E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주장에 의하면 E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2/13)과 달리 1/13(= J의 기여분을 뺀 나머지인 1/2 × 2/13)이 될 것이다].

이에 먼저 관련 법리에 관하여 본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E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망인이 유언으로 처와 자녀들의 상속분을 지정하였다는 사정이나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J이 1960. 8. 20. 혼인한 사실, 망인이 1969. 12.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1.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사실, J은 망인과 혼인 후 망인 사망 시까지 함께 농사를 짓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망인의 위 재산 형성과 유지를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한 J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제2항에 의한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이 있었다는 주장입증은 없는 상황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J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곤란하다(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속에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한 J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J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민법 제1009조 제2항)한 법정상속분을 갖는 것을 넘어 5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할 만큼 ‘특별한 정도’의 기여나 부양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J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자녀들을 키웠다’는 ‘일반적인 정도’의 기여만으로, E의 구체적 상속분을 법정상속분과 달리 함부로 축소, 수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또한, E의 다른 채권자 M 주식회사가 2020. 11. 10. 청주지방법원 2020카단5197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피고들이 2021. 3. 22. M 주식회사에게 E의 채무원리금 10,164,825원을 대위변제하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면서,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E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제외한 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E 사이에서의 구상관계로서 다루어질 문제일 뿐, E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 되는 부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7. 결론

따라서 E과 피고들 사이에 2019. 10. 30.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각 2/13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에서 인정한 19,591,3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각 4,897,826원(= $19,591,307\text{원} \times 1/4$)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 원고가 시가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의한 금액(갑 제6 내지 8호증)을 시가로 주장하였고, 피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그에 따른다.

2) 망인의 처 J은 3/13, 자녀인 E과 피고들은 각 2/13이다(민법 제1009조).